제 100 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부록)

거창군의회사무과

목 차

1.	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 1	Ļ]:
----	---------------------	---	----

□ 세입·세출예산 결산현황

1. 세입예산

가. 일반회계(생략)

나.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ㅂ	세시청에	징 수	プロよる 別	미스나에	스난에 미수납액처리			
一	분	예산현액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		
	계	10,695	11,785	9,961	1,824	80	1,744		
상	수 도	3,681	3,450	3,420	30		30		
주 5	택 사 업	58	56	56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2,728	2,735	2,657	78		78		
농공단	시조성사업	3,119	4,305	2,674	1,631	80	1,551		
주 차	장 관 리	1,109	1,239	1,154	85		85		

2.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11 11 11 11 11)
구 분	예 산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222,994	154,129	90,656	124,074	8,264
합 계	일반	212,299	149,113	86,252	122,862	3,185
	특별	10,695	5,016	4,404	1,212	5,079
	계	13,397	9,673	9,232	441	3,724
산 업 과	일반	10,669	9,658	9,217	441	1,011
	특별	2,728	15	15	0	2,713
	계	8,671	5,723	5,570	848	2,253
지역경제과	일반	4,443	3,262	3,109	848	486
	특별	4,228	2,461	2,461		1,767
산 림 과	일반	7,008	6,585	5,592	993	423
건 설 과	일반	150,416	95,108	41,603	108,202	611
	계	28,746	23,951	18,774	9,560	412
도시환경과	일반	28,688 23,895 18,718		9,560	410	
	특별	58	56	56		2
농업기술센터	일반	1,976	1,868	1,608	260	108
	계	12,780	11,221	8,277	3,770	733
수도사업소	일반	9,099	8,737	6,405	2,558	136
	특별	3,681	2,484	1,872	1,212	597

3. 기 금

가. 연도말 현재액

(단위:백만원)

구 분	적	립	액	사용액	연도말잔액
। T ਦ	계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 ठ न	진도일산목
계	542	367	175	131	411
재해대책기금	459	300	159	131	328
재난관리기금	83	67	16		83

나. 운용내역

(단위:백만원)

_	구 분		수		입		7	प	출
		계	출연금	보조금	이자	전년도 이월금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재적립금
계		542	80	91	4	367	542	131	411
재해대책기	巾	459	64	91	4	300	459	131	328
재난관리기	금	83	16			67	83		83

4. 채 권 액

(단위:천원)

구 분	계	이행기(미도래액	
L	77	원 금	이 자	원 금
합 계	4,456,763	993,003	565,813	2,897,947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등 6건 임차보증금	384,965	0	0	384,965
주택사업채권	258,273	4,444	3,798	250,031
농공단지 특별회계 채권	3,813,525	988,559	562,015	2,262,951

5. 채 무 액

(단위:천원)

ī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잔 액
Ö	합 계	8,319,341	0	1,937,689	6,381,652
특	상 수 도	3,025,000	0	93,400	2,931,600
투별회	주택사업	294,341	0	44,289	250,052
계	농공단지	5,000,000	0	1,800,000	3,200,000

□ 검토내용

(산업과)

- 농업인자녀장학금 과다계상액 미삭감 (부속서류 p75)
 - 당초 예산액 국·도비 포함 294,123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집행은 180,198천원이고 113,924천원의 불용액 중 108,363천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음
 - 동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02년 11월 9일 경상남도로부터 변경 내시가 시달되었음에도 제3회 결산추경에서 삭감하지 아니하였음
- 논농업직불제 및 수매관련 조작비 (부속서류 p77)
 - 논농업직불제 262,800천원과 수매관련 조작비 135,000천원 등 총 364,012천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전액 계획변경 취소로 불용 처리된 것으로 돼 있음
 - 추곡 수매 시기가 10~11월중에 대부분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고 중앙으로부터 현금지원에서 현물지원으로 정책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따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봄

- 별도 다른 예산으로 현물지원을 한 것인지 여부와 결산추경에서 삭감 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지역경제과)

- **시장현대화사업관련**(명시이월사업비) (부속서류 p83)
 - 상공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100,975천원은 2001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비로서 2002년도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음
 - 동 사업비의 집행목적과 미집행사유 발생시기 및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 교통행정 자체사업의 집행사유 미발생 (부속서류 p88)
 - 운수업계 보조금 27,286천원, 시설비 66,134천원 등 총 93,420천원은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음
 -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부속서류 p97)
 - 민간자본보조(402-01) 127,226천원과 지역개발기금융자금(601-01) 200,000천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음
 - 집행사유 미발생된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 공공근로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부속서류 p167)
 - 국·도비 포함 334,61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
 - 집행잔액, 즉, 불용액으로 처리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했는지, 반납하지 아니하는 사업비로 다음연도 집행할 예산이라면 명시이월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농업기술센터)

- 봉산물 프로폴리스 생산을 통한 기능성 제품 개발 (부속서류 p165)
 - 동사업은 프로폴리스 성분 분석 및 제품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과 프로폴리스 채취 종봉 구입비, 프로폴리스 처리용 장비구입비 등임
 - 사업비 50,000천원 전액을 민간자본보조로 농가에 보조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이 중 18,000천원은 연구개발비는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과업지시 등 행정적으로 조치하면서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지 아니하고 민간인에게 보조금으로 지출하여 집행하였고,

특허출원비 2,766,000원은 일반운영비 또는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어야할 성질이며,

연구용역을 맡은 경상대학교 심기환 교수가 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참석한 행사에 3차례에 걸쳐 150,000원의 회의비를 집행한 바 있으나, 용역을 맡은 교수가 현장출장의 경비는 용역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회계질서를 흐트리며 집행토록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봄

- 2002년도 예산안 심의시 사항별 설명서 또는 주요사업 조서상 세부 사업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였다면 발견할 수 있었던 사항임
- 보조금의 자부담 불균형 (부속서류 p164 ~ 165)

(단위:처원)

ग्रीलीम	보 조		소	요사업	દ્રો.ભેગી છ		
사업명	사업자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사업내 용
딸기우량묘	바즈고	<u> </u>	10.000		10.000	2,823	저바이러스 우량
생산시범	리공도	22,823	10,000		10,000	(12.4%)	종묘생산시설(20ha)
수출딸기	이게으	40,000		20,000	20,000	9,009	고품질딸기생산
경쟁력 제고	이재운	49,000		20,000	20,000	(18.4%)	기반조성(6동)
고랭지딸기	조창환	28 006			14 000	14,006	고랭지딸기 우량
우량묘생산	ユるゼ	20,000			14,000	(50%)	무병묘 증식(5동)

- 위 사업내역은 하우스 골조(파이프), 하우스 비닐, 파이프 시공인건비

딸기묘 등 대부분 사업내역이 비슷한 사업임에도 국비지원사업은 자부담이 전체사업비의 12.4%이고, 도비지원사업은 자부담이 18.4% 군 자체사업은 50%를 자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음.

- 농가 지원사업은 일정한 자부담을 원칙으로 보조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유사한 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형평성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고 보며,
- 대상농가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는 지와 자부담 비율을 다르게 하여 집행한 이유에 대한 설명